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3.02.27(월)**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선정 취소, 지원 불가)
- ◆ 직전 3년(2020년~2023년) 경기도와 시·군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불가,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 본 사업은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제작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 접수	선정자 발표	점포개선 등 시공·제작	지원금 지급신청
'23.03.15.(수) ~ '23.03.31.(금)	'23. 5월 말 예정 (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선정 통지일 이후 ~ '23.10.06.(금)까지	시공(제작) 완료 후 ~ '23.10.06.(금)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 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용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유의사항) 소상공인이 아닌 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3년 2월27일(월) ~ 3월31일(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 신청기간 2023년 3월15일(수) ~ 3월31일(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온라인 신청(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공마케팅데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 (우편 신청은 불가함)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 코로나-19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신청 분야 (1개 선택)	신청금액	세부 내용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
☐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 간판(불법 간판 제외) ☐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 점포 인테리어 ☐ 식당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 POS시스템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 CCTV시스템 ☐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 ※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등 신청 불가
☐ 제작비 지원	최대 200만원	☐ 제품포장 ※ 친환경제품 ☐ 상표·디자인출원

○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취소)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 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 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시공업체 2개 이내)**
 - 예) 간판 + 인테리어(가능), 제품포장박스(가능), 선정 후 점포환경개선→ 제작비지원 분야로 변경 불가능
 - 예) 제출한 견적서 공급금액 220만원일 경우 지원금 200만원, 자부담액 20만원, 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4.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6.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시공계획서와 견적서는 심사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자료이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시공계획서가 우선함**

■ 선정 제외(신청 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용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및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 내(2020~2023년)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3.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 제출서류(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

- 필수서류 미제출, 누락, 부적격, 확인 불가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감점 적용함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2021~2022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선택	7.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각 5점, 최대 10점)(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2점) ① 종업원 고용업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소상공인 자격 범위 초과 시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별도 제출 가능 ② 경기도 창업(경영)교육(12h) 수료증 또는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 선정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을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 중 추첨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 동점자 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구 분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정성평가	50점	· 사업추진 적정성(추진계획 및 개선내용 적정성 등) 6점~15점 · 경영개선 효과성(지원 효과 및 지원 필요성 등) 6점~15점 · 신청내용 적합성(견적 적합성, 지원제외 품목 포함 여부) 11~20점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정량평가	50점	·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1점~10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 미제출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 매출액(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12점~20점 ※ 매출액 0원 이하, 매출 확인 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 시 매출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매출감소 추이(직전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기준) 12점~20점 ※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 시 매출 감소 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가산점수	최대 10점	· 사회적 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점 · 상시종업원 고용업체(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5점 · 경기도 창업(경영)교육 12시간 수료자 및 경기도 컨설팅 수료자(2년 이내) 5점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대표자 본인 기준) 2점

4. 지원절차, 선정발표, 선정취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단계별 절차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진흥원)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견적서, 우대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준비서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1~22년 부가세 증명원 등, 가산점 서류, 점포 사진 등
선정평가 및 선정자 결정 (진흥원→소상공인)	·제출서류 검토(신청서류 적격 검토), 심사평가위원회개최 선정자,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선정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신청서 기재 핸드폰 문자 통지) ※소상공인은 선정자 통지를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시공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선정자 통보 후 과제수행 (소상공인→시공업체)	·시공계획 및 견적서에 의거 과제 수행, 견적업체에 시공 의뢰 (시공업체 변경시 사전승인필요) ·시공비용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카드결제 인정 불가) ·시공업체 변경 및 중요 내용 변경시 사전에 진흥원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과제수행 완료(10월 6일) (소상공인→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모집 공고문 기재 지정일까지) ·완료보고서에 시공 전후 사진 첨부 또는 제작비 지원 분야 결과물 사본, 사진 등 첨부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 통장 등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완료순) (진흥원→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수행 및 시공내용 등 확인 및 점검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미비 시 보완하여야 함

■ 선정자 발표 : 2023년 5월 말 예정

신청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 선정취소

- 신청서 허위 작성, 1인 중복신청 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내용이 선정 통지전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기업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법 위반기업으로 확인되거나, 과제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과제 종료 전에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단순 과세유형 전환으로 인한 폐업은 동일 사업장, 동일 사업주,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점포 임대기간 만료, 강제퇴거 등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내(2020~2023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완료보고 미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증빙 부실 제출, 기한내 과제 미완료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변경(시공업체 변경 및 시공 분야 등 견적 내용 변경 시)

- 최초 신청분야는 변경 불가, 신청분야 중 시공업체,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경미한 시공 내용변경, 경미한 시공금액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사후에 거래명세서 제출로 가능
- 제출서류 : (제5호서식) 사업변경 승인신청서, 변경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 사본 등 기타 해당 서류
- 시공내용 변경 및 시공비용이 증가된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함

■ 과제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

- 선정된 지원업체는 경영환경개선사업 과제 완료 후 점포개선 등 완료보고서,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2023년10월 06일 까지) 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완료보고 및 지출 증빙 확인, 시공내용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제출서류 및 시공내용을 검토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본인 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함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1.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7호 서식)		
	2. 완료보고서 (시공·제작 공사 전·후 사진 등 제작 결과물 사본 등 첨부) (제8호 서식)		
	3. 시공비용 지출 증빙 서류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공업체 선정) 단, 시공(제작)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② 계좌 간 이체 확인증(입금자 성명/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단, 신용카드 결제, 현금 거래 불인정, 선정통지 이전 시행한 내용은 불인정 ※ 주의 : 제작(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인정		
	4. 통장 사본 (지원금 받을 신청인 본인 통장)		
해당 추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발급)		
	6. 기타 해당자 추가서류(옥외 간판 시공, CCTV 시공 등)_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해당 구분	추가 제출서류	유의 사항
	간판 시공	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증 ③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_(관할구청 신고)	■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신고 대상이 명확히 아닌 경우는"옥외광고물 신고 비대상확인서" (제10호 서식)제출 가능 단, 간판 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 ■ 정보통신사업자 선정안내확인서(제11호 서식)
	CCTV 시공	①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 시공 분야 변경 시 예) 간판시공→ 도배장판공사 변경시 변경승인 필요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한 시공 분야 변경	①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제5호 서식)_필수 ②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_필수 단, 경기도 외 타지역 시공업체로 변경은 불가	■ 시공하기 시작 사전에 변경승인 신청해야 함
	경미한 소규모 시공 분야 변경 ※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필요	① 변경된 견적서 또는 변경 시공한 거래명세서	■ 경미한 소규모 변경은 변경승인 생략 가능 단, 시공 완료 후 시공한 거래명세서 제출 예) 도배장판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생략 가능

5. 유의사항

■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 **시공계획 및 시공견적서는 최초 신청서와 함께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됨**
(견적서는 1개 이상 ~ 2개 이하로 제출 요망, 예) 간판 시공견적서, 인테리어 시공견적서)
- **시공(제작)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제작비 지원 및 무인주문결제기 신청분야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함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제작)내용과 관련있는 업태와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시공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필증을 제출해야 함** (단, 신고(허가) 비대상인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 제10호 서식 제출)
※ 주의 :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를 득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 취소)

■ 시공비용 등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대표자) 계좌로 지급함
-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 현금 입금,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
-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 온라인 이체 확인증, 입금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및 자부담금 입금 시에는 대표자(또는 법인) 본인 통장에서 거래 업체(시공업체) 대표자의 본인(또는 법인) 통장 계좌로 온라인 이체 입금해야 함(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
- 신청업체는 비용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단,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발행 불가시 시공업체의 매출자료 등 제출 시 예외 인정)
-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초과금 및 부가세 등은 본인 부담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대표자)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시공(제작)완료 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대표자)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지급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금, 자부담금(10% 이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고 지출한 시공(제작)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사진, 결과물,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정당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 지급함

■ 위법, 부당행위 등 제재조치 유의사항

- 위법, 허위, 부당한 방법(부가세 대납, 수수료 요구, 허위·부실시공 등)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래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지원배제, 위반조 업무방해 형사고발 등 유관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
 - **간판, 인테리어 등 시공(제작)으로 지원금을 받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가 배제되며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범위만 사실 확인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반환, 3년간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행정 처분될 수 있음

■ 신청(지원) 포기 및 취소

-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제6호 서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6. 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

문의처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 ~ 18:00)
	인터넷 공고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공지사항
신청서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및 (서식)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gmr.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접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우편 신청	• 우편신청 불가	
방문 신청	• 담당 지역센터	
	지역센터	전화 (소재지)
	• 남동센터	031-8028-5722 (광주시 소재)
	• 남서센터	031-509-0259 (시흥시 소재)
	• 남부센터	031-303-1660 (수원시 소재) ※ 향후 이전 예정
	• 북동센터	031-515-8667 (남양주시 소재)
	• 북서센터	031-5181-7273 (파주시 소재)
	• 중부센터	031-303-1663 (수원시 소재)
신청인 사업자등록 시·군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화성, 평택, 오산, 안성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수원, 용인, 군포, 의왕		
-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출서류] 참조) - 공고기간 : '23.02.27.(월) ~ 03.31.(금) - 접수기간 : '22.03.15.(수) ~ 03.31.(금) 오후 18시까지		
※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별표1]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44. 기타 서비스업	T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